8. 의견서의 제출



헌법소원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(헌법재판소법 제74조 제1 항). 실무상으로는 이해관계기관 등에게 심판회부통지서 등을 송부함과 동시에 의견 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.